

감사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(한국문학번역원)

주요 내용

- 「위원회 운영규정」 개정 후에도, 심사위원(1명)을 3년 연속 선정하거나, 3인 미만의 심사위원(1건)을 운용하는 등 심사위원 선정·운용 부적정
 - ① (참여제한 미준수) '21~'22 해외번출사업의 심사위원이었던 "A 위원"이 '23년 국내 완역사업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는 등 규정과 달리 3년 연속 심사 참여
 - '22. 9. 14. 운영규칙 개정 후 동일 위원회에 3년 연속 참여는 제한되므로 '21~'22년 "심사위원회"에 참여한 "A 위원"은 '23년 "심사위원회"에 참여가 제한됨
 - ② (3인 미만 심사) '22 하반기 국내완역사업의 예비 심사(9.13~9.21.) 및 최종심사(9.26.)를 규정과 달리 심사위원 추가 선정 없이 2명(B, C)으로 진행
 - '22. 9. 14. 운영규칙이 개정되었으므로(부진정 소급), 심사위원이 2명일 경우 심사를 일시 보류한 후 1명의 심사위원을 더 추가하여 진행하는 것이 타당
 - ⇒ 규정과 다르게 심사위원을 3년 연속 선임하거나, 3인 미만의 심사위원회를 운영한 한국문학번역원에 "기관주의" 조치
-
- 심사위원 선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내용 미준수 등
 - ① (국민권익위원회 권고내용 미준수) 번역원은 국민권익위 권고*에 따라 2021. 12. 21. 「위원회 운영규칙」 제4조 제3항을 개정하며 심사위원 무작위 추출 방식을 도입하였으나, 무작위 추출로 심사위원을 선임하던 "번역지원 공모사업"이 2022년 中 폐지되자, 번역지원사업 종료로 인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2022. 9. 14. 「위원회 운영규칙」 제4조 제3항을 삭제하고 심사위원 무작위 추출방식을 운영하지 않는 등 권고사항 미준수
 - * 2018. 12. 17. 국민권익위가 의결한 권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민간위원 위촉 투명성 확보 및 검증 절차 강화를 위해 비상설위원회의 심사위원 위촉 시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위원후보군을 구성 후, '무작위 추출 방식'을 통해 위원을 구성토록 요구하고 있음
 -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는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 제27조에 따라 공공기관장이 제도개선에 반영하여야 함(※같은 규정에 따라 권고 이행실태 점검도 가능)
 - ② (심사위원 무작위 추천제 도입 필요) 심사위원 선정 시 2~3배수 후보군 중 원장이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현 방식*은 국민권익위 권고에 부합하지 않으므로, 향후 심사위원 선정에 무작위 추천 방안 도입 필요
 - * 해외번출사업, 국내완역사업 모두 실무자가 2~3배수 후보(안)을 구성하면 원장이 실무진과 협의하여 후보안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함.
- ⇒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무작위 추천 규정을 면밀한 검토 없이 삭제한 관련 팀장(○○팀)에게 "개인주의" 조치 요구
- ⇒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위원 선발을 위해 심사위원 후보(안) 중 무작위 추천 등 선발 방식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(통보)

주요 내용

○ 평가체계 미흡으로 “작품성” 등 심사결과에 왜곡 발생 등

- ① (평가기준에 없는 항목반영) 평가항목 및 세부요소*에 없는 ▲기지원 여부, ▲사회적 물의, ▲중역 여부, ▲신청서류 미흡 등이 “작품성” 평가에 반영되어 D, E, F, G 등 유명 작가들도 “작품성”에서 “하(10)”나 “落(0)” 평가함

* 해외번출사업·국내완역사업 “심사지침” 내 “작품성” 항목의 평가 세부요소(평가기준)

- ▲원작도서의 질적 우수성, ▲지원장르 부합도, ▲대상 작품/작가의 문학상 수상실적 등 대외지명도

- 작품성 평가 세부요소에 없는 기지원 여부, 사회적 물의 등 항목을 임의로 작품성 등 평가에 반영할 수 없고, 별도의 평가항목 등으로 평가체계를 재설계할 필요

- ② (동일인의 동일작품에 대한 일관성없는 점수부여) 총점 70점 이상이면 전부 지원하는 등 절대평가 방식으로 심사체계가 설계되었으나,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작품을 선정한다는 이유로 동일인의 평가임에도 시기별로 선정 여부에 따라 동일작품에 대해 다른 점수 부여

* 해외번출사업·국내완역사업 “심사지침” 내 지원 기준

- 심사를 통해 건별 ▲작품성, ▲시장 수용도, ▲출판사 역량 및 출간계획, ▲전략우선도를 평가

- ▲총점 70점 이상 번역과 출판 모두 지원, ▲70점~60점 사이나 기번역 작품은 출판만 지원, ▲60점 미만 탈락

- 지원 신청된 작품들을 비교하여 평점을 매긴다면 “작품성” 항목 등의 점수가 동일 심사위원이더라도 회차별로 달라지는 문제 등이 발생하므로 상대평가로 변경 필요

- ⇒ 평가에 필요한 항목(기지원 여부, 사회적 물의 등)을 별도의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, 실제에 맞게 상대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등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평가체계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(통보)